



제 1 장 개 설

1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 기한 한계

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이나 해석	행정소송의 대상 ×
	반사적 이익	소의 이익 無 → 행정소송의 대상 ×
	객관적 소송	• 원칙 → 행정소송의 대상 × • 예외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 ○
	단순 사실행위	• 행정소송의 대상 ×

🔗 관련판례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확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 11. 23, 90누3553).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법정 외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의무이행 소송	의의	당사자의 일정한 신청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행하거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인정 여부	학설	• 부정설: 권력분립원리에 반하고, 항고소송의 종류는 열거적 • 긍정설: 권리보호의 확대로 권력분립원리의 참뜻에 맞고, 항고소송의 종류는 예시적 • 제한적 긍정설: 행정청에게 제1차적 판단권을 행사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처분요건이 일의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사전에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판례	부정설의 입장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분을 발동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인정 여부	학설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판례	부정설의 입장
작위의무 확인소송	의의	행정청에게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인정 여부	부정설(판례)	
적극적 형성소송	의의	행정청의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을 행하는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	
	인정 여부	부정설(판례)	

2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법정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

제 2 장 취소소송

1 의의 및 성질

2 소송요건·소송물

(1) 소송요건

□ 소송요건

- 본안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송 중간이라도 소의 이익의 흠결 등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부적법 각하된다.
- 판례는 제소시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요건을 구비하면 치유를 인정하기도 한다(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경우).
-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불분명하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 관련판례

- 1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판 1997. 7. 25, 96다39301).
- 2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20. 1. 16, 2019다247385).
- 3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판 2021. 2. 4, 2020두48772).

(2) 소송물

의의	소송상 분쟁의 대상물 →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사항
다수설·판례	•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필요성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 • 하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위법사유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소송물은 하나

🔗 관련판례

-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판 1990. 3. 23, 89누5386).
- 2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9. 10. 17, 2018두104).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3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관련판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7. 6. 9, 87누219).

📌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세무사

- ① 소송요건의 심사는 본안심리 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 ②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판결을 내린다.
- ③ 소송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 ④ 소송요건을 너무 엄격히 요구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된다.
- ⑤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정답 ⑤

4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1) 당사자

원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
피고	행정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는 자 → 행정청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 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 대표자·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 인정 ○ • 동물 → 당사자능력 인정 ×
당사자적격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청구의 당부를 확정함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 관련판례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결 2006. 6. 2, 2004마1148·1149).

(3)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① 의의

소송요건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대판 2007. 4. 12, 2004두7924).
제3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법률상 이익의 의미

◀ 관련판례

- 1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 9. 28, 99두8565).
- 2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법규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법규이고,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4. 12. 9, 2003두12073).

③ 법률상 이익판단의 근거규범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의 직접 근거법령의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한정된다는 견해 • 처분의 직접 근거법령뿐 아니라 관계법령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 헌법상의 기본권규정까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	대법원	종래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만을 고려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근거법률뿐 아니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관계법령까지 판단 근거규범으로 본다. 2007 세무사 판례는 종전에는 근거법률만을 기준으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관련법률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	'병마개제조업자 지정사건'에서 기본권까지 고려한다.

◀ 관련판례

+ 대법원 판례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소각 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입지가 결정·고시된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 처분의 근거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폐촉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위 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5. 5. 12, 2004두14229).
- 2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지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률이 된다(대판 1998. 4. 24, 97누3286).
- 3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뿐만 아니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그 근거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대판 1995. 9. 26, 94누14544).

④ 경원자소송

의의	인·허가 등에 있어서 서로 법규상 또는 성질상 양립할 수 없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경원관계에서 면허 등의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다른 경쟁업자에게 발해진 수익적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원고적격 여부	원칙적 인정(통설·판례)

◀ 관련판례

-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대판 1998. 9. 8, 98두6272).
- 2 **원칙적**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 3 경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의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의 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 4. 9, 2019두49953).

⑤ 경업자소송

의의	일정한 시장의 새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신규면허에 대해 추가적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업자가 이러한 신규면허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원고적격 여부	특허	원고적격 인정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원고적격 부정 • 예외: 법이 기존업자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 관련판례

+ 특허의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74. 4. 9, 73누173).

+ 허가의 경우

①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영업장을 허가함으로써 인하여 기존 영업장의 수입이 사실상 감소되었을지라도 그 수입의 감소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신설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63. 8. 22, 63누97). **유사**, 석탄가공업허가, 숙박업구조변경허가 등

② 원고적격을 긍정한 판례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대판 2008. 3. 27, 2007두 23811). **CF** 구내소매인 ×

⑥ 인인소송(이웃소송)

의의	제3자에 대한 수익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인근주민이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적격 여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

◀ 관련판례

+ 원고적격을 긍정한 판례

- 1 주거지역 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대판 1975. 5. 13, 73누96·97).
-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주민에게는 방사성물질 이외에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 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있다(대판 1998. 9. 4, 97누19588). **유사** 레미콘공장, 공장설립승인처분, 토사채취허가 등
- 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합)

+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례

- 4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 9. 26, 94누14544).
- 5 자연환경보전법상 1등급 권역의 인근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4. 2. 21, 2011두29052).

⑦ 단체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

원칙	원고적격 부정 → 단체의 구성원의 지위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의 주주나 임원 •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주주

🔍 **관련판례**

-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이 이를 다룰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4. 12. 23, 2000두2648).
- 2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06. 5. 25, 2003두11988).
→ **제약회사 ○, 의사 ○**
- 3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10. 5. 13, 2009두19168).

⑧ 기타

🔍 **관련판례**

+ 원고적격 긍정

- 1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7. 3. 9, 2013두16852)
- 2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룰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2020. 4. 9, 2015다34444). → **법무사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3 과세관청이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6. 4. 13, 2005두15151).

+ 원고적격 부정

- 1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8. 5. 15, 2014두42506).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다. 반면,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판 1992. 3. 31, 91누6023).

-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②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③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④ 위명(爲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⑤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⑤

(4)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를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① 의의

개념	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내지 필요성 → 권리 보호의 필요성
관계규정	다수설: 제12조 전문은 원고적격, 후문은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

②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칙	소의 이익 부정
예외	처분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처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된 경우 →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有
예외의 예외	1년이 지나면 소의 이익 無

🔗 관련판례

-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89. 11. 14, 89누4833).
- 2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 3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진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0. 4. 21, 98두10080).

③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	소의 이익 부정
예외	회복될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 → 소의 이익 긍정

◀ 관련판례 ▶

+ 소의 이익 부정 - 원칙

- 1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 4. 26, 2006두18409).
- 2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5. 1. 29, 2013두24976).
- 3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2. 1. 11, 2000두2457).

+ 소의 이익 긍정 - 예외

- 4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2. 1. 11, 2000두3306).

④ 처분 후의 사정변경으로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無

◀ 관련판례 ▶

+ 소의 이익 부정 - 원칙

- 1 치과외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3. 11. 9, 93누6867).
- 2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96. 2. 23, 95누2685).

【배고】 대학입학교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나고 입학정원에 못 들어가게 된 경우 당해 연도의 합격자로 인정되면 다음 연도의 입학시기에 입학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룰 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0. 8. 28, 89누8255).

- 3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그 처분의 위법을 다룰 실제적 효용 내지 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8. 9. 8, 98두9165).

【배고】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3. 12. 26, 2003두1875).

+ 소의 이익 긍정 - 예외

- 4 일반사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파면처분으로 이미 상실된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될 수는 없으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대판 1983. 2. 8, 81누121).

⑤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의 경우

처분이 소멸된 후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 → 허용 ×

◀ 관련판례 ▶

- 1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4, 91누4737).
- 2 자격정지처분의 취소청구에 있어 그 정지기간이 경과된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설사 그 처분으로 인하여 명예, 신용 등 인격적인 이익이 침해되어 그 침해상태가 자격정지기간 경과 후까지 잔존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동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8. 5. 23, 78누72).

⑥ 기타 소의 이익 관련판례

◀ 관련판례 ▶

- 1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는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법한 감봉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1977. 7. 12, 74누147).
- 2 파면처분이 있는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을 때부터 당연퇴직 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1985. 6. 25, 85누39).
- 3 임기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6. 2. 9, 95누14978).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9. 1. 30, 2007두13487).

- 4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3. 10. 10, 2003두5945).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판 2010. 7. 29, 2007두18406). → **부수적 이익**

-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대판 1998. 9. 4, 97누19588).

- 6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7. 1. 12, 2015두2352). →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처분은 당초처분이다.**

- 7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대판 2015. 2. 12, 2013두987).

- 8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동일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0. 4. 29, 2009두16879).

- ① 지방회의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③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④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⑤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정답 ③

(5)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① 원칙 -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행정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른바 처분근거)을 가진 기관 •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법상의 관서장이 이에 해당하나, 반드시 조직법상의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 지방의회, 법원장 등 • 행정소송법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 등이 행정청에 포함됨을 명시 → 공무수탁사인도 포함(기능적 의미)
승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르면 처분청이 피고

◀ 관련판례

- 1 인천직할시의 사업장폐쇄명령처분을 통지한 인천직할시 복구청장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1990. 4. 27. 90누233).
- 2 서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14. 9. 26. 2013두2518). →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권한의 위임 · 위탁의 경우 - 수입청

-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청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상실하고 그 사항은 수입청의 권한으로 되고 항고소송에서 수입청이 피고가 된다.
- 권한 자체가 위임청으로부터 수입청에 이양된다. → **수입청이 피고가 됨이 원칙**

◀ 관련판례

- 1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대판 2007. 8. 23. 2005두3776).

- 2 성업공사가 한 그 구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입청으로서 실제로 구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판 1997. 2. 28, 96누1757)

③ 권한의 대리·내부위임의 경우

원칙		피대리기관 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 본인(피대리기관, 위임청)
예외	수입기관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입청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행정청 • 처분명목자가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도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 → 피대리 행정청

◀ 관련판례

- 1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입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1991. 10. 8, 91누520).
- 2 행정처분을 행할 적절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1. 14, 89누4765).
- 3 부산직할시장의 산하기관인 부산직할시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이 한 공단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사 위 사업소장이 부산직할시로부터 단순히 내부위임만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 금강공원 관리사업소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1. 2. 22, 90누5641).
- 5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목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목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대결 2006. 2. 23, 2005부4).

④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 공정거래위원회 • 배상심의회 • 토지수용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중앙해양심판원장

⑤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	소속장관 → 공무원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처분청이 대법원장인 경우	법원행정처장
처분청이 국회의장인 경우	국회사무총장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장인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관련판례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하므로,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합의 상당하다(대결 1990. 3. 14, 90두4).

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 교육감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지방의회의장선거의 경우	지방의회

◀ 관련판례

- 1 **판례요**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 2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Q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세무사

- ①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②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③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 ④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⑤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된다.

정답 ④

Q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2 세무사

-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②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③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④ 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 ⑤ 지방법무사회는 무효 등 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6) 피고경정

(7) 공동소송

(8) 소송참가

- ① 제3자의 소송참가
-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
- ③ 다른 소송에의 준용
- ④ 관련조문

(9) 소송대리인

5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필요적 전치)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의적 전치)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안 날부터 90일(불변기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이 필수적 전치주의인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관련판례

-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7. 6. 14, 2004두619).
-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을 한 경우,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7. 6. 14, 2004두619).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 4. 28, 2005두14851).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9. 8. 9, 2019두38656). →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장애등급결정)의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있는 날부터 1년(불변기간 X)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는 날 →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도달주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이 필수적 전치주의인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제소 가능 • 정당한 사유: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의 '천재, 지변,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 넓다.
안 날과 있는 날의 관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는 날 중 어느 하나만의 기간만이라도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종료한다.

◀ 관련판례

- 1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 2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11. 24, 2011두18786).

(3) 제소기간에 대한 특수문제

복효적 행정행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 제기 가능 → 그러나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판례).
소의 변경 등과 제소기간	피고경정, 소종류의 변경 → 전소의 제기 당사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 판단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의 추가·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
불고지·오고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법 → 불고지·오고지에 관한 규정 無 • 판례 → 행정심판법상 불고지·오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행정처분이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제소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5. 8, 2000두6916).

◀ 관련판례

- 1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2. 11. 17, 2021두44425).
- 2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대판 2013. 7. 11, 2011두27544).

(4) 제소기간 규정의 준용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준용한다.
-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 관련판례

-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7. 6. 9, 87누219).
- 2 부작위위법확인인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인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Q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세무사

- 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②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③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⑤

Q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4 세무사

- ①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④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①

6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이송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심급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심제 → 제1심 법원은 행정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 •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연결되는 2심제를 취하고 있다. 	
사물관할	행정법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원칙. 예외 단독	
토지 관할	보통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특별관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 가능
	토지관할의 성질	임의관할 →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변론관할 준용
	다른 소송에의 준용	재판관할에 관한 제9조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 준용

(2) 관할법원에의 이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제7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민사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판례).

🔗 관련판례

- 1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 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판 1997. 5. 30, 95다28960).
- 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후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2. 11. 17, 2021두44425).

- 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③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정답 ③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 관련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4. 9. 2008두23153).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이송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일 것 •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할 것 •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할 것
병합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체인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 • 관련청구소송일 것 • 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것
이송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당해 관련청구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이송결정은 이송을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3) 병합의 형태

주관적 병합과 객관적 병합	단순병합	양립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경우
	선택적 병합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
	주위적·예비적 병합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 병합이 가능

◀ 관련판례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 8. 20, 97누6889).

Q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세무사

- ① 피고와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②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에 병합하기 위하여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③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 ④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주된 청구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이어야 가능하다.
- ⑤ 주된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은 각각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②

8 취소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처분+재결)

(2) 행정청의 행위

(3) 구체적 법집행행위

- ① 행정입법
- ② 행정계획
- ③ 공법상 계약
- ④ 사실행위

(4) 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법집행행위)

(5) 공권력의 행사행위

(6) 거부행위(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7) 별도의 권리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8) 관련논점(과세처분에서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9) 기타 처분 판례

(10) 재결

- ① 원처분주의
- ②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 ③ 구체적 검토
- ④ 개별법상 재결주의

9 전심절차

(1) 원칙적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2)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
필요적 전치를 취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 국세기본법(제56조 제2항), 관세법(제120조 제2항), 도로교통법(제142조),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3항) 등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구비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충족 여부(요건)

행정심판의 적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 → 행정심판전치의 요건 충족 × • 적법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 행정심판전치의 요건 충족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	인적 관련성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취소소송의 원고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 수인이 공동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행정심판을 거치면 족하다.
	사물관련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주장사유의 공통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사유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전치요건의 충족시기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위법하나, 소가 각하되지 않는 동안에 사실상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4) 적용범위

- 무효등확인소송 → 적용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
- 당사자소송 → 적용 ×

(5)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심판제기는 하되 재결을 요하지 않는 경우	심판제기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 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Q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8 세무사

-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⑤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정답 ⑤

10 취소소송과 가구제

(1) 집행정지

①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소송에만 있는 규정**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제2항(재처분의무) 규정은 준용 ×**

② 집행정지의 요건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적극적 요건)	본안소송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소멸
처분 등이 존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거나 처분이 소멸한 후 → 집행정지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경우 → 집행정지 × • 거부처분의 경우 →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 금전보상으로는(금전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 CF 심판: 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필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음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각각 별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일적·포괄적으로 판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소극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리: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 •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 → 행정청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판례).

🔗 관련판례

- 1 **📌 중요**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5. 11. 11, 75누97).
-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대결 2010. 11. 26, 2010무137).
- 3 **📌 중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결 1992. 2. 13, 91두47).

③ 입증책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등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등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 신청인
- 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 행정청

◀ 관련판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결 1999. 12. 20, 99무42).

④ 집행정지의 내용

⑤ 집행정지의 절차

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형성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의 효력 그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속하지 않은 법률 상태에 놓이게 하는 형성력 발생 •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기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 행정청은 동일내용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또는 이에 관련된 처분을 할 수 없다. → 이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
시간적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 •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행정지결정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장래효).

⑦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집행정지는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결 2011. 4. 21, 2010무111 전합).

⑧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⑨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 → **준용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준용 ×**
- 당사자소송 → **준용 ×**

(2) 가처분제도

의의	금전 이외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도모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제도	
가처분의 가능성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을 행정소송에도 준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
	학설	소극설(통설) / 적극설 / 절충설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대결 2009. 11. 2, 2009마596). CF 당사자소송: 가처분 ○

Q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 세무사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④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11 취소소송의 심리

행정소송법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1) 심리의 내용

요건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 • 요건심리의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정을 명하고,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의 소송판결을 한다. • 행정소송의 요건 구비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항상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본안심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가의 여부, 즉 계쟁처분에 위법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

(2)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법원은 소송제기 없이 재판할 수 없고, 소제기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판결할 수 없다(처분권주의). • 예외: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법률문제·사실문제 및 재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심리권은 소송물의 실체면·절차면, 법률문제·사실문제의 모든 점에 미친다. • 재량행위의 당·부당은 심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심리대상이 될 수 있다.

(3) 심리의 절차

심리의 일반원칙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변론주의 등
행정소송 심리의 특수한 절차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가능(제26조) →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직권탐지주의 채택(통설)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25조).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주장책임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판례).	
입증책임	판단기준	법률요건분류설(통설·판례) →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의 조사에도 그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 원고가 부담(통설)
	처분의 적법성	행정청이 부담
	취소사유	원고가 부담
	절차적 요건	행정청이 부담

🔗 관련판례

-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4. 7. 24, 84누124).
-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17. 10. 12, 2017두48956).
- 3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대판 1997. 6. 19, 95누8669 전합).
- 4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5)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시설(통설·판례)

🔗 관련판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대판 1993. 5. 27, 92누19033).

Q 항고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세무사

-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②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판결을 한다.
- ③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④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 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④

Q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2 세무사

- ①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 ②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⑤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청이 행정소송 중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 신뢰보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소송법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허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 긍정설 → 처분시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다수설·판례).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은 채 적용법조만의 추가·변경과 처분시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된다(판례). 행정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지만 허용된다(대판 1999. 8. 20, 98두17043).

Q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세무사

-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판결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정된다.
- 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근거규정은 없다.
-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⑤ 처분청이 처분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①

13 소 변경

소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처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등 준용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되는 청구는 예외적 행정심판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구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소의 종류의 변경	○	○	○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	○	×	○

- ①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 ③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④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⑤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14 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기각판결 및 인용판결

소송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 • 소송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부적법각하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인용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하는 판결 •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

◀ 관련판례

- 1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상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판 2001. 6. 12, 99두8930).
- 2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8두2270).

비고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지만,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4. 10. 14, 2001두2881).

(2)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의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성격	공익을 사익에 우선시키는 제도 → 법률적합성원칙의 예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이 위법할 것 → 사정판결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처분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판단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정판결의 필요성 →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행정소송규칙 제14조(사정판결) 법원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행정청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 가능(조문은 無)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배척 → 항소 가능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 → 위법성 치유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원고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 가능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소소송에만 인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사정판결 ×

Q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세무사

- 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② 사정판결은 공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 ③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
-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정답 ④

(3) 판결의 효력

① 불가변력과 불가쟁력

불가변력	자박력, 선고법원에 대한 효력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에 대한 효력

② 기속력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는 효력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성질	특수효력설 →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정법이 부여한 특수한 효력(다수설·판례)	
내용	반복금지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 처분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거부처분 취소에 따른 재처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의 거부처분과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절차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결과제거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은 위법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 부담 → 조문 × • 취소소송에 의해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기속력에 의해 압류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되었던 원고를 복직시켜야 한다. • 기속력에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가 포함되는지 명문근거는 없지만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판례 •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9. 10. 17, 2018두104).</p> <p>•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대판 2019. 6. 27, 2018두49130).</p> </div>
효력 범위	주관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관계행정청이란 처분청과 같은 조직에 속하는 행정청에 한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직에 속하는 행정청이라도 취소된 처분과 관계하고 있는 한 모두 포함된다.
	객관적 범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시간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취소된 처분 후 새로운 처분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력의 위반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행위 → 당연무효	

③ 형성력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판결의 확정으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상 법률상태 형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효력 • 형성력은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고,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내용	형성효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별도로 취소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소급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의 효과는 처분시에 소급 • 취소판결 후에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지처분은 당연히 무효
	제3자효 (대세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9조 제1항). •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기판력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 재판이 확정된 후소의 재판에 있어서 동일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는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 실질적 확정력 • 기판력은 인용판결뿐만 아니라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 	
취지	분쟁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 방지 + 법적 안정성	
범위	주관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 ○ → 제3자 × •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나 공공단체 ○
	객관적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주문과 판결의 이유 중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사항 ○ •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 • 판결이유 중에서 실시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등 ×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점으로 발생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소송	<p>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 후에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어 무효확인판결을 내릴 수 없다.</p>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의 위법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 ∴ 기판력 미침
	기판력 부정설	취소소송의 위법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 ∴ 기판력 부정
	제한적 긍정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 →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친다. •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 →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판례	광의의 행위위법설의 입장에서 제한적 긍정설에 따른다.

KEY POINT 기관력과 기속력의 비교

구분	기관력	기속력
의의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 범위 내에서 종전의 판단과 모순저촉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소송당사자도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는 효력
근거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 법률적합성 담보
성질	소송법상 구속력	실체법상 구속력(특수효)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범위: 소송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객관적 범위: 판결주문에 표시된 계쟁처분의 위법 또는 적법성 일반 시간적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 객관적 범위: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시간적 범위: 처분시
판결의 범위	인용판결 + 기각판결 모두 인정	인용판결에만 인정
내용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원도 판결내용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재처분외무, 결과제거외무(통설)
위반의 효과	재심청구사유	무효(통설·판례)

⑤ 간접강제

의의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 은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외무에 대한 간접강제 규정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준용한다. 무효등확인소송 → 명문규정 無 ∴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나뉘나, 판례는 소극적

관련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피할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4. 1. 15, 2002두2444).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결 2002. 12. 11, 2002무22).
-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외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결 1998. 12. 24, 98무37).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① 행정강제
- ② 국가배상
- ③ 즉시강제
- ④ 직접강제
- ⑤ 간접강제

정답 ⑤

15 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16 취소소송의 불복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처분 등의 유효확인소송,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 처분 등의 존재확인소송, 처분 등의 부존재확인소송 및 처분 등의 실효확인소송이 포함된다.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항고소송(다수설·판례) • 중요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판례).

(2)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병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병렬적 관계에 있는 별개의 소송 •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소송의 종류 선택 가능 •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포섭 관계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당해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의 판결, 즉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중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판결 역시 취소소송인 이상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판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 다음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관련판례

- 중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7. 6. 9, 87누219).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 한다(대판 1986. 9. 23, 85누838).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 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대판 1987. 4. 28, 86누887).

행정소송규칙 제16조(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재판장은 무효확인소송이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함을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법규

-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 준용
-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재량처분의 취소,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 →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3 당사자 및 참가인

(1) 원고적격

현행 규정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가 제기 가능	
협의의 소의	학설	• 법적 보호이익설: 즉시확정의 이익 不要 • 즉시확정이익설: 즉시확정의 이익 내지 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구
	판례	종래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관련판례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판 2008. 3. 20, 2007두6342 전합).

(2) 피고적격

(3) 피고경정·소송참가·소송대리인 등

4 소송의 대상

5 소송의 제기

행정심판 전치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등확인소송 → 필요적 전치주의의 적용 × •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 ×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
제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등확인소송 → 제소기간의 제한 ×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인 경우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해야 한다.
소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변경에 관한 제21조의 규정 →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준용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제22조의 규정 →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집행정지	집행정지에 관한 제23조 →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

6 심리

입증책임의 분배	학설	피고인 행정청이 당해 처분 등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견해
	판례	원고에게 처분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有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

◀ 관련판례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4. 2. 28, 82누154).

7 판결

판결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의 종류와 동일 → 각하/기각/인용 •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 × →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판례).
판결의 효력	기속력, 형성력, 기판력

8 간접강제의 문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8. 12. 24, 98무37).

제 4 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및 성질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 • 확인판결

2 적용법규

-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 준용
- **중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집행정지,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 ×

3 당사자

행정소송법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4 소송의 대상

- (1) 부작위
- (2) 부작위의 성립요건

5 소송의 제기

행정심판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 적용 ○ •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
제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제소기간의 제한 × •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당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소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 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는 경우 → 부작위의 위법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 상실 ∴ 각하
청구의 병합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규정 준용
소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변경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된다. • 단, 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은 준용 ×
집행정지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 준용 ×

6 소송의 심리

심리의 범위	학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적 심리설: 심리의 범위는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한정 실체적 심리설: 심리의 범위는 부작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 가도 심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판례	절차적 심리설의 입장
입증책임의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것과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 → 원고 원고의 처분 신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었다는 것 → 피고 행정청
위법판단의 기준시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CF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 처분시

7 판결

▶ KEY POINT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구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성질	형성소송	준항고소송 (실질적 확인소송, 형식적 항고소송)	확인소송
예외적 필요적 전치주의	○	×	○ (의무이행심판)
제소기간	○	×	• 원칙 ×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적용 ○
사정판결	○	×	×
집행정지	○	○	×
간접강제	○	×	○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적 소송에 해당한다. 직권심리주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피고의 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의 변경, 판결의 기속력·대세효 등 		

Q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2020 세무사

- ① 공동소송
- ②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③ 사정판결
- ④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⑤ 제3자의 소송참가

정답 ③

Q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2015 세무사

(ㄱ) 취소소송	(ㄴ) 무효등확인소송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공법상 당사자소송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정답 ①

1 의의

개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의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고소송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당사자소송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그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라 그러한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물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20헌가12, 2022.2.24,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행정소송법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2 당사자소송의 종류

실질적 당사자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래적 의미의 당사자소송 대등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형태이나, 실질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예) 보상금 증감소송)

3 실질적 당사자소송 관련판례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등
- 판례는 이러한 소송을 민사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 관련판례

- 1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1995. 4. 28, 94다55019).
-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 3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21. 2. 4, 2019다277133).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① 공법상 계약

◀ 관련판례

- 1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9. 14, 92누4611).
- 2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12. 11, 2001두7794).
- 3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 12. 22, 95누4636).
- 4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② 공법상 금전급부소송

㉠ 법령에서 바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당사자소송)

◀ 관련판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판 1992. 12. 24, 92누3335).

㉡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치는 경우(항고소송)

◀ 관련판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고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당사자소송)

◀ 관련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4. 7. 8, 2004두244).

㉕ 일반적인 경우

◀ 관련판례

- 1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8, 2012다102629).
- 2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11. 6. 9, 2011다2951).
CF 중앙관서의 장 강제징수
- 4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2019. 1. 31, 2017두46455).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 사안**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사업시행자의 일시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를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의 일시사용에 대한 동의를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9. 9. 9, 2016다262550).

행정소송규칙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 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 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 마. 공무원의 보수·퇴직금·연금 등 지급청구
 - 바. 공법상 신분·지위의 확인
3.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4 형식적 당사자소송

5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1) 당사자

원고적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 준용 ○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준용 × ∴ 민사소송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다.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으로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판례).
피고적격	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 행정청 ×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 대표: 법무부장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재판관할

(3) 제소기간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 → **준용 ×**
-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불변기간으로 한다.**

(4) 행정심판전치

-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 → **준용 ×**

(5) 소의 변경

(6)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규정 → **준용 ○**
-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7) 가처분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규정 → **적용 ×**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 → **준용 ○**

🔗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결 2015. 8. 21, 2015무26). **CF** 항고소송: 가처분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통점

- 재판관할(제9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제10조)
- 피고의 경정(제14조)
- 공동소송(제15조)
-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 소의 변경(제21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 직권심리(제26조)
- 판결의 기속력(제30조)

제 6 장 객관적 소송

1 의의

-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 특별히 법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의 제기 가능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2 민중소송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객관소송
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일반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소송 → 열기주의, 법정주의
구체적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소송

3 기관소송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 	
권한쟁의 심판과의 구별	형식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
	대상	기관소송은 공법상의 법인 내부에서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나, 권한쟁의심판은 공법상의 법인 상호 간의 외부적인 분쟁을 대상으로 함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성질	객관적인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일반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	
제소권자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 가능	

재판관할	대법원 → 제1심 법원이면서 최종적 법원
구체적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 감독청의 재의요구명령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 감독청의 제소지시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 교육위원회와 시·도회의의 월권을 이유로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Q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 세무사

- ①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 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제6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를행정기관 또는 그 장
-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당사자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는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심리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5절 재판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보칙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소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20헌가12, 2022.2.24.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규칙

[시행 2024. 3. 1.] [대법원규칙 제3132호, 2024. 2.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수행자는 그 직위나 업무,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해당 사건의 소송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취소소송

제5조(재판관할) 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그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제3항의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의 강제, 제한, 금지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실현하는 처분,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부여하는 처분, 특정구역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금지를 하는 처분 등을 말한다.

제6조(피고경정)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제7조(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에 대한 소송통지) ① 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명령·규칙 소관 행정청이 피고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해당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답변서의 제출)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피고의 명칭과 주소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소송수행자의 이름과 직위
4.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5. 처분등에 이른 경위와 그 사유
6. 관계 법령
7.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8.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9.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피고의 증거방법과 원고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10. 덧붙인 서류의 표시
11. 작성한 날짜
12. 법원의 표시

② 답변서에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증거방법 중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집행정지의 종기) 법원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그 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구)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⑦ 피해학생등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구한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2.]

제11조(비공개 정보의 열람·심사) ① 재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 사건,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취소소송이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를 위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열람·심사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공개 청구된 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명령을 받은 피고는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은 그 자료를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재판장은 지체 없이 원고에게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소송기록과 분리하여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반환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그 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경우 또는 위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자료를 반환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1항의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상소법원에 송부한다.

제12조(행정청의 비공개 처리) ①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적혀 있는 서면 또는 증거를 제출·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또는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공개 처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 또는 관계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비공개 처리된 정보의 내용
2.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은 서면 또는 증거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열람·복사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구)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2.>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성폭력피해자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피해자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의견은 처분사유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14조(사정판결) 법원이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결을 할 때 그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5조(조정권고) ①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할 때에는 권고의 이유나 필요성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16조(무효확인소송에서 석명권의 행사) 재판장은 무효확인소송이 법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취지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함을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비용부담) 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처분등을 함에 따라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당사자소송

제19조(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 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소송
2. 그 존부 또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 가. 납세의무 존부의 확인
 - 나.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
 - 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 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관련자 또는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청구
 - 마. 공무원의 보수·퇴직금·연금 등 지급청구
 - 바. 공법상 신분·지위의 확인
3.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소송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인가 이전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4.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청구 소송

제20조(준용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